

법률자문 의뢰서

의뢰부서	지역복지통합본부 (자산형성팀)			의뢰일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2020.1. 23.
팀 장	이미자	02-6353-0331	2mija@welfare.seoul.kr	
담 당	조성일	02-6353-0337	kiting@welfare.seoul.kr	
건 명	서울형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개인정보 전산화에 따른 동의서 작성			
질의 사항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형자산형성지원 및 장애인 이룸통장의 경우 참가자(약정자)와의 조건이행 및 분쟁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약정문서 보관 - 현재) 약정서 2부 작성-서명 후 각각 보관 본인1부, 재단 1부 <p>■ 질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정) <u>재단에서 전자문서(법적효력 동일시)만 보관하고</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 혹은 프린트물로 배포 가능여부? ② 요청이 없더라도 무조건 개별적으로 서명문서 배포? - 앱(프로그램) 개발 업체에 <u>개인정보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줘야 하는지?</u>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존 동의서 양식에 전산개발업체를 포함해야 하는지? (혹은 업체에 보안각서만 받으면 될런지) ② 혹은 별도로 개인정보동의서를 구비 후 새로 서명 보관해야 하는지? <p>붙임 약정서식 프로그램 개발(안)</p> <p style="text-align: right; color: red; font-weight: bold;">→ 검토 후 회신은 20. 2. 14.까지 부탁드립니다.</p>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위 질의에 대한 법률의견을 드리오니 검토하시고 의문사항이나 추가 질의사항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전자문서의 보관 관련 일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은 전자문서(“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 제2조 제1호)의 효력에 대하여 “전자문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다른 법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법 제4조),

‘전자서명법’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해당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전자서명이라고 하고(법 제2조 제2호), 공인전자서명 이외의 전자서명에 대하여도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른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3조 제3항).

따라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전자문서를 통해 작성 및 보관 등 업무를 실시하여도 법적 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전자문서의 배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마련한 전자문서가 계약자에게 꼭 배포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약정자의 이해 등을 위해 약식의 문서 정도는 약정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배포하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방법이 아닐까 사료됩니다. 공익재단이 그 사업을 함에 있어 약정서 제공을 예외적으로만 한다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 예외적으로 하게 되면 실무선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 될 수 있어 보여 오히려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약관이 별도로 존재하고 그 내용이 방대하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그 부분은 “요청/불요청” 또는 “문서 제공/이메일 제공” 등의 방식으로 구분하여 제공 여부를 정하는 것으로 대안을 마련하여도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3. 개인정보 위탁 문제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자의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별도의 동의서가 필요하지 않은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제3자 제공(마케팅 등 목적)이라는 개념과는 다른 것입니다.

업무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동의서에 별도로 위탁업체를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면 족합니다. 통상 개인정보동의서 중 “조회 및 제공에 관한 사항”란 중 “제공받을 자” 부분에 위탁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위탁업체의 목록에 포함하는 것으로 법상 의무를 이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의서에 해당 업체를 포함할 필요 없고, 별도 개인정보 동의서를 서명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위탁업체의 관리 문제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보안 각서 정도를 받아두시는 것은 좋겠습니다.